



14-하-4.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사고 보험(공제)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공시시기】 : 2023년 10월

【공시내용】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대비 보험(공제)가입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2023학년도 기준)

기준연도	안전관리 계획 [PDF]	안전사고 보험(공제)가입 현황																			
		구분				배상책임				교내·외				신입생(OT) 등				보험(공제) 청구건수 (전년도)		기타추가 가입사항 (명칭 입력)	비고
		보험 상품명	시작 일	종료 일	개월 수	대인		대물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비		사망, 후유장애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보상한도(원)	자기 부담금 (원)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인적	물적				

■ 작성지침

【안전관리 계획】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험상품명】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한 담보를 포함한 상품명

※ 대학종합보험/경영자배상책임보험/캠퍼스보험 등에 한하여 작성

※ 법적 의무가입 보험(14-하-1. 에 따른 실험실습실 보험, 화재보험 등) 작성 제외, 여행자보험, 기업 현장실습보험 등 수시가입 보험은 기타추가가입사항에 명칭만 기재 (증권 제출)

【시작일】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시작일

【종료일】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종료일

【개월수】 :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실시하는 총 보상 기간(예: 12개월)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공식적 행사)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학생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입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에 대한 보상한도 금액(보상한도가 무한인 경우 해당란은 공란으로 하며, 비고란에 해당내용 서술)

- 【교내·외】 :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활동 중 학교 내·외에서 입은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한도 금액(보상한도가 무한인 경우 해당란은 공란으로 하며, 비교란에 해당내용 서술)
- 【신입생(OT) 등】 : 신입생 입학 전 개최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대학 공식 행사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한도 금액(보상한도가 무한인 경우 해당란은 공란으로 하며, 비교란에 해당내용 서술)
- 【보험(공제) 청구건수】 : 전년도 1.1.~12.31. 기준, 교내·외에 발생한 대학안전사고로 보험·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인적·물적 건수(법적 의무가입 보험(14-하-1. 에 따른 실험·실습실 보험, 화재보험 등), 여행자보험, 기업 현장실습보험 등 수시가입 보험 제외)
- 【기타추가 가입사항】 : 여행자보험, 기업 현장실습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사항 기재(예: 현장실습보험, 여행자보험, 외국인학생상해보험 등 단기로 가입하는 보험 중 대표성을 지닌 명칭을 각 1개만 기재 후 해당 증권 제출)

■ 참고사항

- 안전사고 보험 현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기 제출된 자료(보험증서)를 공동 활용할 예정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